

## 교육정책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1-1-50
제정일자	2020.10.27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2

2020.10.27.제정 2022.04.15.개정

소관부서 : 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 교육정책위원회(이하 "본 위원회"라 한다.)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25명 내외로 구성한다.

- 1. 위 원 장 : 총장
- 2. 부위원장 : 부총장
- 3. 위 원 : 처장, 보직자, 학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을 교직원 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.
-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통괄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3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4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.

- 1. 수업, 실험, 실습에 관한 사항
- 2. 교육과정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- 3.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
- 4. 대학 종합발전 계획 및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- 5.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업무관장) 본 위원회에 관한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.

## 부 칙

제1조(경과) 대학교육에 관한 정책소통을 위하여 기존의 보직자 회의를 교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일) 본 위원회 규정은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교육정책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1-1-50
제정일자	2020.10.27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2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 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